

2) 병가

가) 병가의 종류별 내용

(1)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

(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예1) 위암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예2) 장애인 교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나) 감염병에 걸려 그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

-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사안으로 처리하여 연도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공무상 병가 사용 가능

나) 병가일수의 계산

(1)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함

(3)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다) 병가의 운영방법

(1)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병지참, 병조퇴 등 시간단위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교원휴가 관련 질의답변 사례집(2022.7월, 교육부)

☞ 동일한 병가의 경우 승인권자의 판단 하에 최초의 진단서로 갈음하여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음.

단, 동일한 사유 여부는 학교장(승인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 갑작스러운 병가 사유 발생으로 병가 사용 당일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연가로 처리하고, 진단서 발급 후 병가로 소급처리 가능

(2)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가) 공무상 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나) 공무상병가, 일반병가, 연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은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서장의 승인(질병휴직의 경우 임용권자의 명령)을 거쳐 사용할 수 있음

- 단,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 시 복직 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없음